

지식재산 경영인증 안내

www.ipcert.or.kr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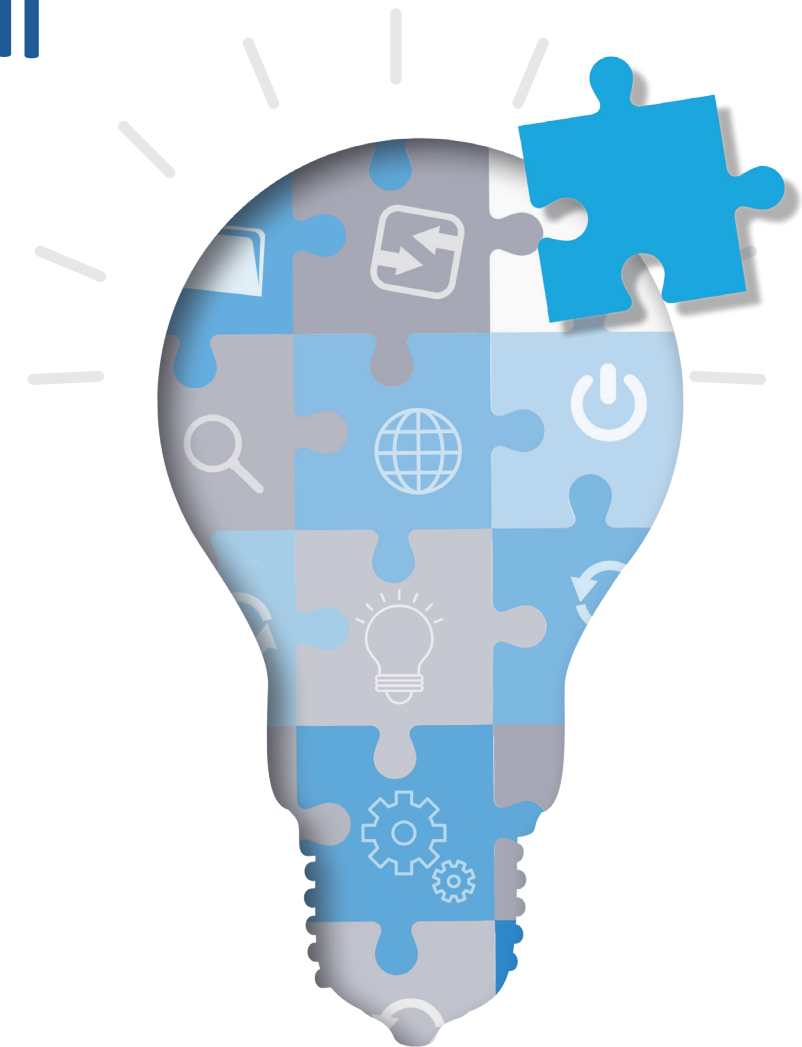
한국발명진흥회

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1
한국지식재산센터 17층 지역지식재산실

지하철 이용

2호선 역삼역 하차 (4번출구, 직진 200m)

2호선 강남역 하차 (12번출구, 직진 300m)



특허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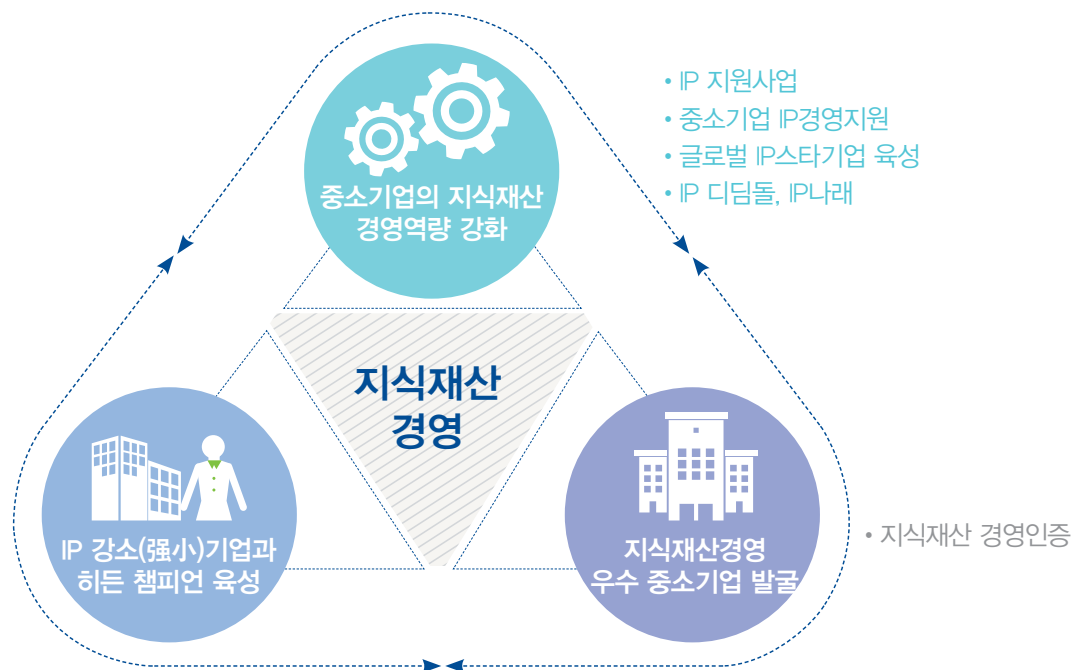
한국발명진흥회



지식재산 경영인증 개요

지식재산경영이란?

- 지식재산경영이란 특허·디자인·상표·영업비밀 등 지식재산을 기업의 자산으로 활용하는 경영전략을 통해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경영활동입니다.



지식재산 경영인증이란?

- 지식재산 경영인증이란 공정한 심사를 통해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우수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로써 인증되면 기업 대외 신뢰도 제고 및 다양한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인증 근거 규정

- 지식재산기본법 제 32조 제 2항, 발명진흥법 제 24조의 2



인증 주요 혜택

특허·실용신안·디자인
우선심사 대상으로 지정

특허청 각종 지원사업 참여시
가점 부여

-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제도
- IP활용전략 지원사업
- IP R&D :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 전략지원 사업

특허권·실용신안권·
디자인권(법인명의)에 대한
연차등록료(4~6년차) 50% 감면

SGI 서울보증보험

- 이행보증한도 증액
- 이행상품 보험료 10% 할인
- 신용관리서비스 무상 제공

중소벤처기업부
각종 지원사업 참여시
가점 부여

- 창업성장기술개발
- 기술혁신개발
- 제품서비스기술개발
- 공정·품질 기술개발 등

중소벤처기업부
정책자금 융자 시
한도 증액
(45억원 → 70억원,
신성장기반자금 중
시설자금의 혁신형
기업 기준 적용)

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

- TV·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% 할인
- TV·라디오 등 방송광고 제작비 50% 할인



지식재산 경영인증 info



신청대상

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



신청수수료

66만원(X) → 11만원(VAT포함)



신청시기

연중 상시 접수



인증 판정기준

100점 만점에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



신청방법 및 문의



www.ipcert.or.kr

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실

사업관련문의. 02-3459-2861



전산관련문의. 02-6015-1023

지식재산 경영인증 기준

심사항목 및 배점

심사항목	세부내용	배점
지식재산 담당 조직 및 인력	• 지식재산권 관련 전담부서 보유한 경우 10점, 전담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4점(최대 8점),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인당 2점(최대 4점), 전담인력 1명과 겸임인력 보유한 경우 6점	10점
직무발명 활성화	•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선정 시 : 5점 • 그 외의 기업은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 보유(2점) 및 최근 2년간 아래와 같은 직무발명 활동에 따라 건당 점수 부여 – 직무발명보상 : (출원) 0.5점, (등록) 1점, (실시 또는 처분) 1.5점	5점
임직원 1명당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비율	•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"(최근 2년간 산업재산권 총 출원 수)/(임직원 수)" 계산**하여 점수 부여(10% 이상인 경우 12점) * 국내 특허권 건당 1건, 국내 실용신안권·상표권·디자인권 건당 0.8건, 해외 특허권 건당 1.5건, 해외 실용신안권·상표권·디자인권 건당 1.2건으로 환산하여 합산 ** 단, 특허권(실용신안권 포함)만의 비율이 8%를 초과할 수 없고, 상표권만의 비율이 4%를 초과할 수 없으며, 디자인권만의 비율이 4%를 초과할 수 없음	12점
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건수	•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, 국내 특허권 건당 1점, 국내 실용신안권·상표권·디자인권 건당 0.8점, 해외 특허권 건당 1.5점, 해외 실용신안권·상표권·디자인권 건당 1.2점으로 환산한 점수 합계로 산정* * 단, 특허권(실용신안권 포함)만의 비율이 8점을 초과할 수 없고, 상표권만의 비율이 4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디자인권만의 비율이 4점을 초과할 수 없음	18점
지식재산권 교육	• 국내 특허권 건당 1건, 국내 실용신안권·상표권·디자인권 건당 0.8건, 해외 특허권 건당 1.5건, 해외 실용신안권·상표권·디자인권 건당 1.2건으로 환산하여 합산*(15건 이상인 경우 18점) * 단, 특허권(실용신안권 포함) 환산 건 합이 12건을 초과할 수 없고, 상표권 환산 건 합이 6건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디자인권 환산 건 합이 6건을 초과할 수 없음	5점
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	• 보유 국내 특허권 중 특허분석평가시스템(http://smart.kipa.org) 평가결과 "AAA" 등급인 건당 1점, "AA"등급은 건당 0.9점, "A"등급은 건당 0.7점, "BBB"등급은 건당 0.5점, "BB"등급은 건당 0.3점, "B"등급은 건당 0.1점가점 부여(최대 5점)	5점
지식재산권 교육	•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여부(3점) 및 교육 참여 임직원 비율(비율×0.1점)	5점
연구개발 인력 및 금액	• 15인 이상 기업의 경우 "(연구개발 인원 수)/(임직원 수)" 계산하여 점수 부여(15% 이상인 경우 5점) • 15인 미만 기업의 경우 연구개발 인력 점수 산정 : 1인(1점), 2인(3점), 3인 이상(5점) • "(최근 2년간 연구개발비)/(최근 2년간 매출총액)" 계산하여 점수 부여(10% 이상인 경우 7점)	7점
지식재산권 동향 파악 및 활용	• 최근 2년간 선행기술조사, 특허맵 등을 통해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지 평가 • 최근 2년간 연구개발 방향설정 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회피설계를 실시하는지 평가	18점
지식재산권 적용 제품 매출 비중	• "(최근 2년간 보유 특허권·실용신안권 적용 제품 매출액)/(최근 2년간 매출총액)" 계산하여 점수 부여 (20% 이상인 경우 5점)	5점
지식재산권의 실시권 등 활용	• 최근 2년간 보유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(사용권)/통상실시권(사용권) 허여·유지 건수 및 외부 지식재산권 도입·유지 건수 측정 담보를 통해 자금을 대출 한 건수, 신탁을 한 건수 측정(건당 1.25점)	5점
지식재산권 분쟁 사전 점검	• 최근 2년간 자사 제품이 타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와 타사 제품이 자사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적절하게 점검하고 있는지 평가	5점

지식재산 경영인증 신청절차

기업 등록 및 로그인

-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등록이 가능
- 기업 등록한 기업은 사업자 등록번호 기반으로 로그인 가능
 - ▶ 로그인 시 사업자 등록번호와 등록된 담당자 전화번호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정확하게 입력
 - ▶ 사업자 등록번호를 통해서 담당자 휴대폰 번호를 찾기 가능
 - 담당자 전화번호 재설정이 필요하면 전산 담당자에게 문의/요청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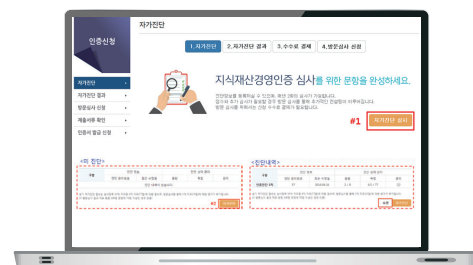
인증신청

- 지식재산경영인증 자가진단 및 방문 심사 신청 가능하며, 제출서류 등록 및 자가진단 리포트의 PDF 다운로드 가능
 - ▶ 자가진단을 통해 8개 문항을 직접 작성하고, [지식재산 경영진단 리포트]를 PDF로 저장하여 활용 가능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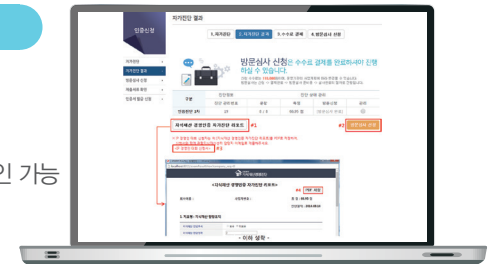
자가진단

- 수수료 결제 없이 자가진단을 통해서 진단 정보 확인 가능
 - ▶ 자가진단 실시(#1) 클릭 후 자가진단 내용 확인 가능
 - 자가진단(#2)은 8개 문항으로 구성
 - 자가진단 상태 관리는 수시로 수정 가능
 - ※ [수정] 버튼 클릭 시 자가진단 1번 문항이 팝업창으로 열립니다.
 - ※ 자가진단 결과는 참고하되 방문 심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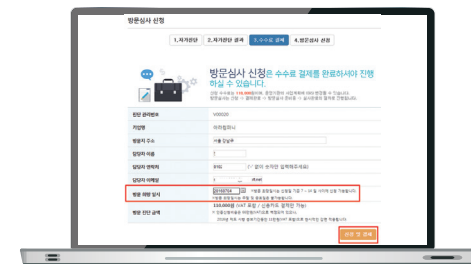
자가진단 결과

- 자가진단 결과 확인 및 방문심사 신청
 - ▶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가진단 리포트(#1) 클릭 시 자가진단 결과 확인 가능
 - 문항별 자가진단 현황은 [PDF 저장] 버튼(#4)을 통해 활용 가능
 - 제출 서류 확인은 자. 제출서류 확인 이동
 - ▶ [방문심사 신청](#2)은 지식재산 경영인증 수수료 결제 시 사용



수수료 결제 및 방문심사 신청

- 추가적인 컨설팅을 위한 방문 신청 수수료 결제
- 방문심사 신청 및 조회 가능
- 방문심사일 기준 30일 이내 인증여부 결정



인증서 발급 신청

- 인증 등록된 인증서를 직접 발급 가능
 - ▶ 인증서 미보유시 인증서 발급 신청 불가
 - ▶ 인증서 보유 시 유효여부가 인증 완료된 인증서(#1)를 클릭
 - ▶ 인증서의 기업 상세 정보가 불일치 시 운영요원에게 문의/요청





지식재산 경영인증 서류



증빙(제출)서류

- 1 중소기업 확인서 등 중소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2 최근 3년간 재무제표
- 3 조직도, 업무분장표, 인사발령지 등 지식재산 담당 조직·인력의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4 출원사실증명원 등 최근 2년간 국내외 산업재산권 출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5 등록원부 등 국내외 산업재산권 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6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임직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
- 7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에 선정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(특허청) 및 직무발명제도 보상규정과 최근 2년간 보상이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8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관련 교육 개최 및 참여 임직원 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9 최근 2년간 임직원의 교육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10 조직도, 업무분장표, 인사발령지 등 연구개발 인원 수를 파악할 수 있는 서류
- 11 최근 2년간 시장의 지식재산권 동향을 파악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자료
- 12 최근 2년간 특허권·실용신안권이 적용된 제품의 매출액을 파악할 수 있는 서류
- 13 등록원부, 계약서 사본 등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의 전용·통상실시권(사용권)을 활용한 사실과 외부 지식재산권을 도입한 사실, 신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14 보유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 대출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15 최근 2년간 지식재산권 분쟁을 사전 점검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


지식재산 경영인증 멘토링 사업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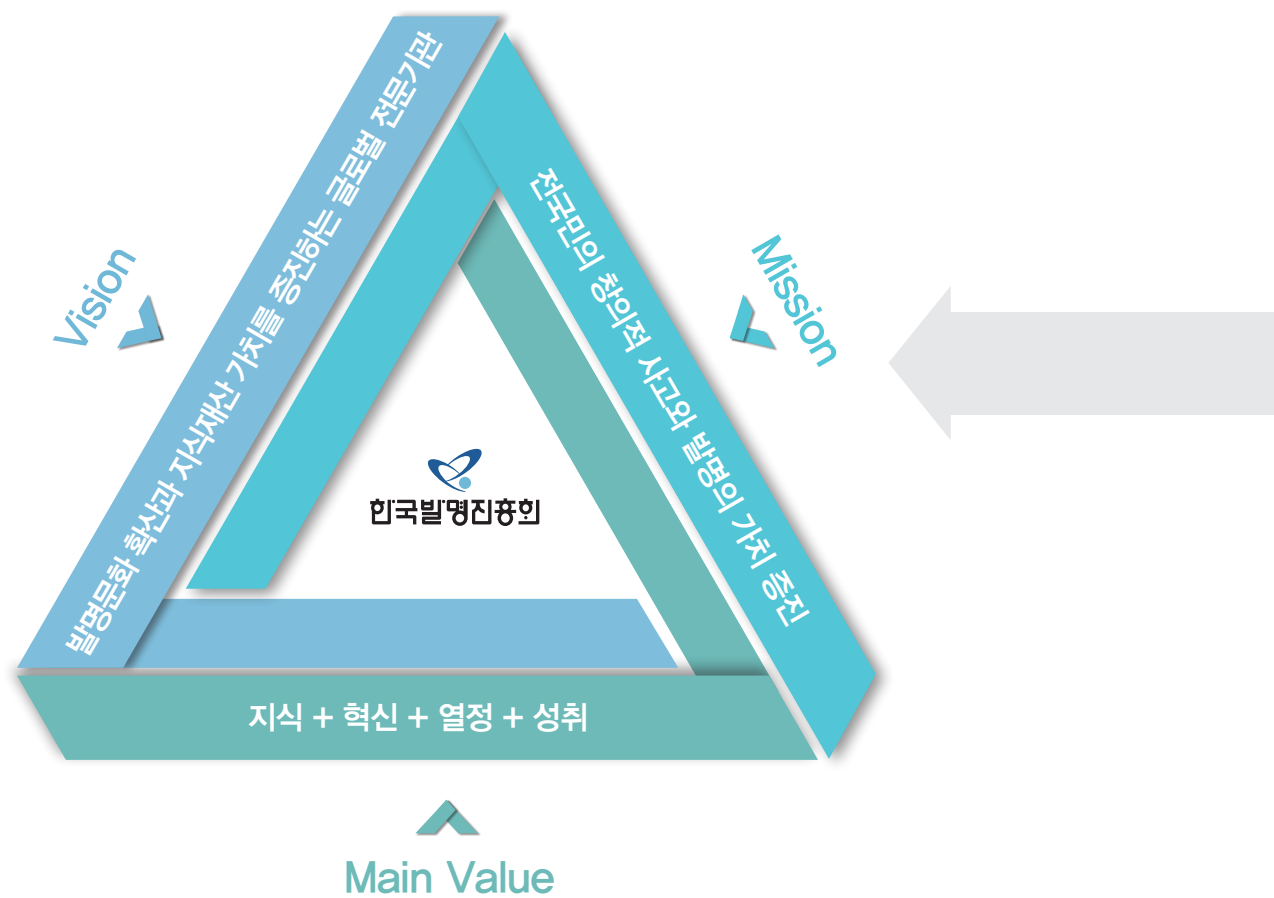
목 적	중소기업에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여 지식재산 경영인증 추진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애로 사항 및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제시
대 상	지식재산 경영 도입 예정 기업, 지식재산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, 인증 신청 후 기준 미충족 된 기업 * 지식재산 경영인증 자가 진단 실시 기업에 한해 신청(www.ipcert.or.kr)
멘 토	변리사, 기술사, 지식재산관련 박사학위 소지자 등 지식재산경영 전문가
비 용	무료
일시·장소	기업이 원하는 시간, 원하는 장소(추후 협의 예정)
시 간	2~3시간
내 용	지식재산경영 도입 및 활성화 전략 제시, 지식재산 경영인증 설명, 기타 지식재산 경영 관련 기업이 요청한 사항
신청기간	연중 수시 (사업 예산 내)
신청방법	신청서 작성 후 메일송부(lj@kipa.org)
문 의	한국발명진흥회 지역지식재산실 담당자 [Tel. 02-3459-2861] [지식재산 경영인증 홈페이지 : http://www.ipcert.or.kr]

※ 본 과정은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인증 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지원으로 수행되는 사업입니다.
※ 수행된 지식재산 경영 컨설팅 중 일부 기업의 상담내역이 모범사례로 발굴되어, 상담 내용이 지식재산 경영인증을 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

한국발명진흥회

한국발명진흥회는
발명진흥사업을 체계적·효율적으로 추진하고
발명가의 이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
발명진흥법 제52조에 의거 설립된 공공기관입니다.



전략목표

